

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007-제83호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일자 2007. 11. 27.

제 출 자 사 천 시 장

1. 개정이유

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항이 사천시세 조례로 정해져 있어 삭제하고 사천시세 감면조례로 이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 (안 제30조) - 사천시세 조례에서 사천시세 감면조례로 이관

3. 주요토의과제: 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세법」 제9조

- ▶ 표 준 안 : 행정자치부 재정세제본부-2481(2007. 10. 4)
경상남도 세정과-10235(2007. 10. 5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담당관

라. 기 타

1) 신·구 조문 대조표 : 따로붙임

2) 입법예고 결과 : 접수 의견 없음

가) 예고기간 : 20일이상

나) 예고방법 : 일간신문 및 시청홈페이지 게시공고

다) 예고문안 : 따로 붙임

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사천시조례 제 호

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를 삭제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사 유
제30조 【 <u>구관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</u> 】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“ <u>구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</u> ” 이라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. 1. <u>구매·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</u> 2. <u>보관,가공,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</u> 3. <u>생산 및 검사사업용 부동산</u> 4. <u>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</u>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	제30조 <삭제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	감면사항이 일반조례로 되어 있어 삭제하고 감면조례로 이관